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6월 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5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매월 1일자로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. 단, 2020년 이전 입사자는 해당 입사월 기준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일자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| 관 | 부 | 서 | 경 | 영 | 지 | 원 | 부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|---|
| 입 안 자 | 직 성 | 위 성 | 명 명 | 경 | 영 | 지 | 원 | 부 |
| | | | | | | | | 장 |
| | 이 | 현 | 동 | | | | | |
| 담 | 당 | 자 | 성 | 명 | 이 | 태 | 권 | 부 |
| | | | | | | | | |
| 자 | 성 | 명 | 명 | 성 | 용 | 현 | | |
| 자 | 성 | 명 | 명 | 이 | 태 | 권 | 부 | 부 |
| | | | (전 | | | | | |
| | | | 화) | (390-7615) | | | | |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9조(정기승급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<u>년 4회로</u> 하며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 1일자로 하되,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.</p> <p>③ <생략></p> | <p>제9조(정기승급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----- <u>매월 1일</u>자로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. 단, 2020년 이전 입사자는 해당 입사월 기준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일자로 한다.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|